

	Chap7. 벌칙 59. 기타 죄	대법원 2026. 5. 14. 선고 2025도1596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(마) 파기환송
제목	반도체 제조용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첨단기술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	
판시사항	1. 구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2019. 8. 20.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 산업기술보호법') 제2조 제1호 (나)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의미(=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·생산·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), 2.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정보가 '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'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, 3. 구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(2015. 6. 2. 시행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101호, 이하 '이 사건 고시') [별표 1]의 중분류 '담수'의 의미	
판결이유	1.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(나)목에 따르면,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·생산·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(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·단체의 장을 말한다)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. 구 산업발전법(2020. 2. 11.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고시 [별표 1]에는 '시스템 산업', '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대분류 '수자원', 중분류 '담수', 소분류 '막분리' 이하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'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'이 고시되어 있다. 첨단기술 및 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 기술·제품 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하고,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·확인하여야 한다(이 사건 고시 제4, 5조). 2.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). 어떠한 정보가 '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'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,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, 생산,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,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,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·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25. 9. 25. 선고 2022도7718 판결 참조). 3. 이 사건 고시 [별표 1]의 중분류 '담수'의 의미는 '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'와 같이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.	

(1) 본 판례의 의의 및 취지

- 본 판례는 반도체 제조용 Non-Chemical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 구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“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.
- 대법원은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관하여, 고시된 첨단기술의 문언과 분류체계만을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, 해당 정보가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, 생산,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,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,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.
- 본 판례는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도1614 판결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의미 해석 기준과, 대법원 2025. 9. 25. 선고 2022도7718 판결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전제로 한 판례이다.
- 특히 이 사건 고시 [별표 1]의 중분류 '담수'의 의미를 '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'에 한정하지 않고,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 데 의의가 있다.

(2) 사안개요

- 피해자 회사는 초순수를 제조하여 반도체 공정에 공급하는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.
- 공소사실상 초순수시스템은 고난도 수처리 설계 및 자동화 운영기술이 요구되는 현존 최고 수준 수처리 엔지니어링 기술들의 종합시스템이다.
-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로서, 수자원 분야의 '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'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었다.
- 피고인은 2011. 7. 4.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9. 2. 20. 퇴사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 및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.
-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였다.
- 피고인은 2018. 6.경부터 2019. 2.경까지 공소와 1 회사 △△ 반도체공장 V1 라인 초순수시스템 설치 공사의 시공 관리 및 발주처 대응업무 등을 담당하였다.
- 피고인은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인 공소와 2 회사의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기 위해 2019. 2. 20.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다.
- 피고인은 공소와 2 회사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, 2019. 2. 12.경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컴퓨터 파일들을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을 통해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하였다.
- 대상 설계자료는 다음 3개 파일이다.
 - 피해자 회사의 설계 노하우 등을 반영하여 초순수시스템의 최적 설계값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설계 템플릿인 "20181218_용량.XLSX" 파일
 - 초순수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한 제어로직, 설비 운전조건, 인터락 정보 등이 정리된 "E-PJT OPERATION LOGIC_종합본_RO_190108.XLSX" 파일
 - "E-PJT UPW_BLOCK TIME CHART_RO_190103.XLSX" 파일
- 피고인은 2019. 2. 22.경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설계자료를 자신의 노트북에 옮겨 저장한 후, 2019. 3. 2.경 그 노트북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.
-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것이다.

(3) 법리

1)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의 의미

-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(나)목에 따르면,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·생산·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.
- 이 사건 고시 [별표 1]에는 '시스템 산업', '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'의 대분류 '수자원', 중분류 '담수', 소분류 '막분리' 이하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'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'이 고시되어 있다.

2)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의미의 해석 기준

-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.
- 따라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.

3) 산업기술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

-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.
- “어떠한 정보가 ‘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’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,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, 생산,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,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,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·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”
- 사례형 답안상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다.
 -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, 생산,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
 -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
 -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
 -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·개별적으로 판단

4) 이 사건 고시상 중분류 ‘담수’의 의미

- 이 사건 고시 [별표 1] 중 ‘시스템 산업’, ‘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’의 대분류 ‘수자원’은 ‘원수의 종류’와 ‘처리수의 활용목적’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.
-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이를 ‘담수’와 ‘정수’의 중분류로 구분하고 있다.
- 대법원은 산업발전법과 구 산업기술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, ‘담수’와 ‘담수화’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, 이 사건 고시 [별표 1]과 유망기술체계도의 각 분류체계의 차이, 이 사건 기술이 ‘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기술’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, 생산, 보급 또는 사용에 기여하는 영향력,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.
- 그 결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.
- “이 사건 고시 [별표 1]의 중분류 ‘담수’의 의미는 ‘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’와 같이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 이 ‘담수’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.”

5) 죄형법정주의 및 예측가능성 관련 원심 논점

- 원심은 어느 기술이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‘첨단성’을 갖추는 것과 별도로, 형식적으로 ‘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.
- 원심은 이 사건 기술이 실질적으로는 첨단성을 갖춘 기술이라거나 그 실질적 첨단성 여부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,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고시의 문구를 그 본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.
- 원심은 만약 실질적 첨단성을 이유로 고시되어 있는 중분류의 문구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거나 기술 명칭 자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그 기술이 속한 것으로 고시되어 있는 분야를 무시하고 해석한다면,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수범자인 일반인으로서 해당 기술을 취급한 자신의 행위가 첨단기술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법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.
- 원심은 “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”고 판단하였다.
-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하여, 이 사건 고시상 중분류 ‘담수’의 의미를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

이 '담수'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, 원심이 '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'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.

(4) 특허법원 / 원심법원 판단

* 이 사건 원심은 특허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. 9. 12. 선고 2025노343 판결이다.

-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'반도체 제조용 Non-Chemical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'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고시에 열거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.
- 원심은 대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.
- 원심은 이 사건 고시 중 대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첨단기술로 검사가 주장하는 것은 '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'수자원 / 담수 / 막분리 /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'이라고 보았다.
- 원심은 이 사건 고시가 첨단기술을 열거하면서 단순히 기술 명칭만 기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, 그에 앞서 그 기술이 속하는 분야를 대분류, 중분류, 소분류로 명시하고 있고,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.
- 원심은 특히 첨단기술의 경우 첨단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의 명칭 또는 범위를 대략적으로 고시할 뿐이므로, 첨단기술의 명칭 자체 외에 그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, 즉 이 사건 고시의 분류 역시 고시된 첨단기술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.
- 원심은 이 사건 고시 중 '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'은 그 중분류가 '담수'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.
- 원심은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상
 - '해수' 분야는 해수에서 염분을 포함한 물속의 용존물질 대부분을 제거하여 식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이 용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공정기술에 해당하고,
 -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초순수를 생산하는 기반 공정기술은 '공정수' 분야로 분류된다고 보았다.
- 원심은 "담수" 또는 "담수화"의 사전적 정의와 이 사건 고시의 표에 기재된 표현 등을 근거로, 중분류 '담수'의 의미가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았다.
- 원심은 결국 이 사건 고시 중 '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' 부분은 해수 담수화 분야에 대한 세부기술을 고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.
- 원심은 이 사건 기술은 해수를 처리하여 담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를 처리하여 반도체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다.
- 원심은 어느 기술이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'첨단성'을 갖추는 것과 별도로 형식적으로 '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'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.
- 원심은 이 사건 기술이 실질적으로는 첨단성을 갖춘 기술이라거나 그 실질적 첨단성 여부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,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고시의 문구를 그 본래 의미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.
- 원심은 "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이러한 해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"고 판단하였다.

(5) 대법원 판단

1) 원심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

- 대법원은 "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."고 판시하였다.

2) 관련 법률 및 고시

-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(나)목에 따르면, **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·생산·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** 중에서 **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**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.
- 구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고시 [별표 1]에는 **‘시스템 산업’, ‘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’의 대분류 ‘수자원’, 중분류 ‘담수’, 소분류 ‘막분리’ 이하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‘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’이** 고시되어 있다.
- 첨단기술 및 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 기술·제품 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하고,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검토·확인하여야 한다.

3) 관련 법리

- 대법원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.
- “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.”
- 대법원은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.
- “어떠한 정보가 ‘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’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,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, 생산,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,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,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·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”

4) 인정 사실

- 이 사건 고시 [별표 1]의 모두 부분에는 **‘첨단기술의 개념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 참고’, ‘분류체계는 다를 수 있음’**이라고 기재되어 있다.
-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에 따르면, 수자원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는 **‘원수의 종류’와 ‘처리수의 활용목적’**에 따라 담수화, 정수, 공정수로 구분한다.
- 유망기술체계도상 담수화 분야는 해수에서 염분을 포함한 물속의 용존물질 대부분을 제거하여 식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공정기술에 해당한다.
- 유망기술체계도상 공정수 분야는 폐수를 재활용하거나 반도체, LCD, 생명공학 등에서 필요로 하는 초순수를 생산하는 기반 공정기술에 해당한다.
- 이에 반해 이 사건 고시 [별표 1]에서는 **‘시스템 산업’, ‘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’의 대분류 ‘수자원’을 중분류 ‘담수’, ‘정수’로만 구분하고, ‘담수’ 또는 ‘정수’ 분야가 어떠한 분야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.**
- 피해자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**‘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고효율 RO 및 Non-Chemical 초순수 제조 시스템’**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였다.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. 10. 4. 위 초순수 제조 시스템이 **‘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-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기술’**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.

5) 구체적 판단

- 대법원은 이 사건 고시 [별표 1] 중 '시스템 산업', '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'의 대분류 '수자원'은 '원수의 종류'와 '처리수의 활용목적'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.
-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이를 '담수'와 '정수'의 중분류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았다.
-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였다.
 - 산업발전법과 구 산업기술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
 - '담수'와 '담수화'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
 - 이 사건 고시 [별표 1]과 유망기술체계도의 각 분류체계의 차이
 - 이 사건 기술이 '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기술'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, 생산, 보급 또는 사 용에 기여하는 영향력
 -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
-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.
- "이 사건 고시 [별표 1]의 중분류 '담수'의 의미는 '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'와 같이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 이 '담수'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."
-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.
-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(나)목, 산업발전법 제5조의 '첨단기술의 범위 에 속하는 기술'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.
-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.

(6) 결론

-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대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.
-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**상상적 경합 관계** 또는 **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** 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.
- 따라서 대법원은 **원심판결 전부를 파기**하였다.
-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 심법원에 환송하였다.

(7) 한줄 키워드 요약

-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인지 여부는 고시된 첨단기술과의 밀접한 관련 성,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여부, 산업경쟁력 보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·개별적으로 판단하고, 이 사건 고시상 '담수'는 해수 담수화의 경우뿐만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한다.